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6
----------	------

제출일자 : 2024.

제출자 : 달성군수



1. 개정이유

낙동강레포츠밸리의 시설 이용 및 추가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5조제2항)
- 나. 시설이용료 반환 기한 설정(안 제7조)
- 다. 사용자 시설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조정(안 제8조)
- 라. 사전예약제 운영 내용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기한 변경(안 제11조)
- 마.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변경(안 별표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4)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10. 4. ~ 10. 24.)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중 “반환한다”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설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1시간 초과마다 1만원 또는 3시간 초과부터 1일치 시설 이용료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추가 이용일 해당시설에 예약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48시간”을 “24시간”으로, “이용예정일 전까지”를 “예약 후 1시간 이내”로, “계좌로”를 “입금방법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시 교부된 시설이용권을 사용하여 시설 이용 예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시설 전체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른 이용 예약신청에 우선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이용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우선 예약 가능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약시스템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시설이용료(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및 제21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이용료(사용료)(이하 시설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일괄하여 “시설이용료”라고 한다) 전액 환불 ○ 이용예정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시설이용료의 90퍼센트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시설이용료의 80퍼센트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 :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 환불 ○ 계약기간 내에 사용이 중단된 경우 : 미사용 기간분 시설이용료에 대한 위약금 30%를 공제한 후 환불 ○ 당일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취소 시 : 전액 환불 ○ 입실 후 자리의 이동 및 변경에 관련된 취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 지급 ○ 이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1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 이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2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 이용예정일 당일 통보한 경우: 시설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3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 예약 시스템 오류 및 금액 입력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예약의 취소 및 전액 환불
3.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시설이용료 감면)</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p> <p>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p> <p>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p> <p>4.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과 수상계류장을 동시에 이용 시(1회 한정)</p>	<p>제5조(시설이용료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p> <p>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p> <p>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p> <p>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p> <p>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p>

③ ~ ⑤ (생략)

제7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수납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2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시설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하며, 그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1시간 초과부터 2시간이하까지는 제4조에 따른(이하 같다) 시설이용료의 10퍼센트를, 2시간 초과부터 3시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수납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2의 각 구분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

제8조(시설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1시간 초과마다 1만원 또는 3시간 초과부터 1일치 이용료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간이하까지는 시설이용료의 20퍼센트를, 3시간 초과부터는 1일치 시설이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 ① (생략)
-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그 기한의 종료시간이 이용예정일 및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예정일 전까지)에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그로써 시설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 이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별표3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 밸리 수상레저 계류장 이용 시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생략)
- 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이용일 해당시설에 예약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 ① (현행과 같음)
- ② -----
-----24
시간-----

-----예약 후 1시간 이내-----
-----입금방법으로-----

-----.

<삭제>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별표2]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제7조 및 제21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생 략) <신 설> <신 설>
2.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생 략) <신 설>
3.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생 략)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시 교부된 시설이용권을 사용하여 시설 이용예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군수는 시설 전체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른 이용 예약신청에 우선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이용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우선 예약 가능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약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별표2]

시설이용료(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및 제21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당일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 입실 후 자리의 이동 및 변경에 관련된 취소는 수수료를 면제
2.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예약 시스템 오류 및 금액 입력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예약의 취소 및 전액 환불
3.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의 관할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기업이 군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및 군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을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 타 자치구 우선예약 관련 조례

구분	조례명	내 용
1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제7조의3(우선예약) 연천군민과 장기숙박신청자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제7조(예약) 제3항 시장은 휴양림 등 숙박시설의 20퍼센트 내에서 충주시민이 우선예약하게 할 수 있다.
3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이용 신청) 제2항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13시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 장애인 및 산림복지바우처 등 우선예약 신청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 25일 13시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4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운영규정) 제2항 인터넷 사전예약 신청 시 화성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예약 및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